



보험 청구권신타

- 활용과 법적 과제 -

신영증권(주) 패밀리헤리티지본부
오영표 본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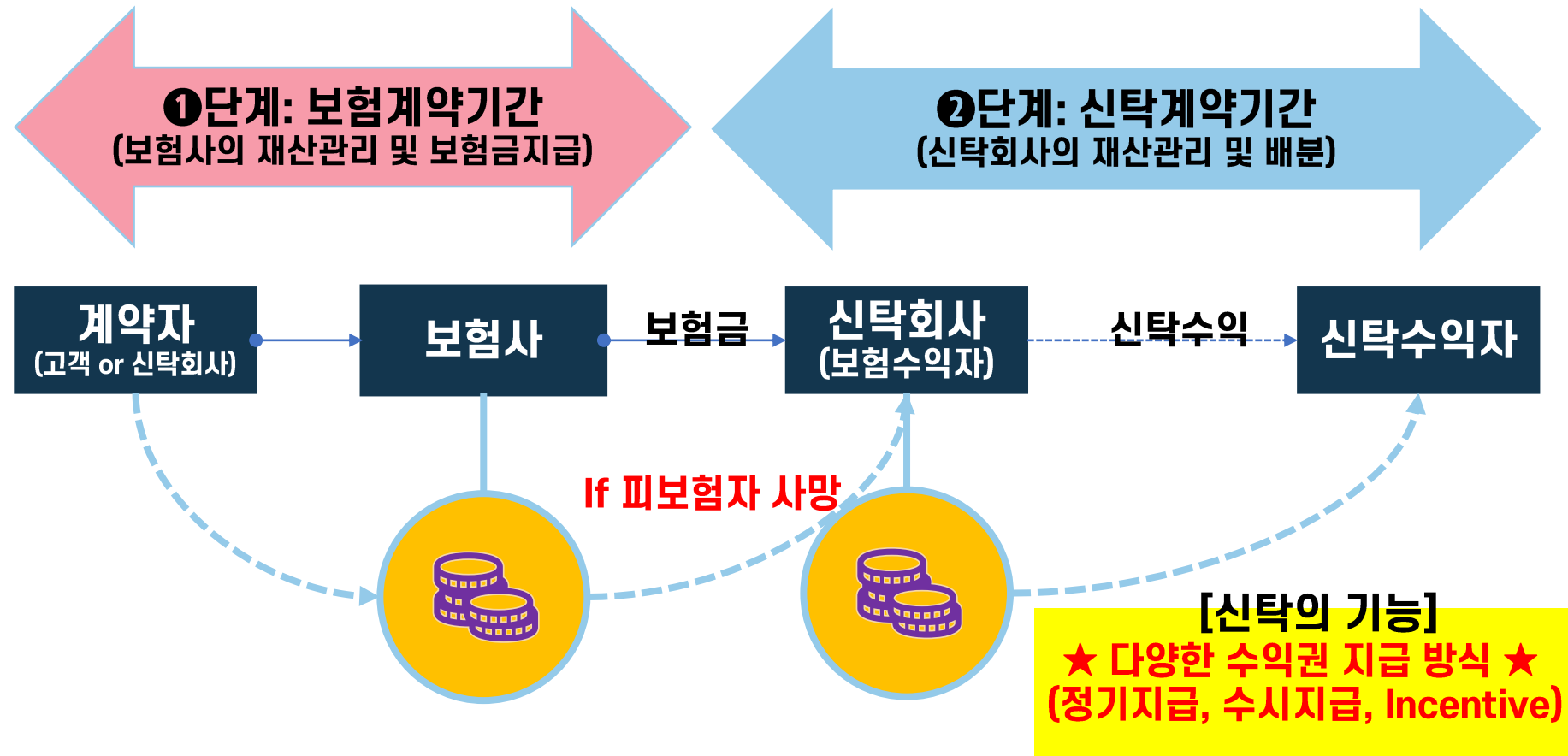
“위험인수라는 생명보험의 순기능 BUT 본인 사후 지급되는 생명보험금의 관리소홀에 대한 예방 도구 필요”



생명보험금청구권 = 피보험자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에 의해 구체화 되는 ‘정지조건부 채권’

보험사고로 지급되는 생명보험금을 신탁재산으로 하는 신탁으로, 수탁자는 생명보험금을
지정된 수익자를 위해 보관, 관리, 운용하는 신탁
(『생명보험계약의 수익자』를 『신탁계약의 수익자』로 치환 + 사후 재산관리기능 탑재)

Memo



“보호를 필요로 하는 가족을 위한, 다양한 사후 재산관리 및 배분기능 활용”

1	미성년자녀를 위한 재산관리	① 부모 사후 미성년자에게 지급 되는 생명보험금의 안전한 관리 및 활용 (생애주기별 생활비, 학비 지급) ② 미성년후견제도의 보완 (후견인의 재산편취 행위 방지 및 후견업무의 효율성)
2	장애인(신체, 정신)을 위한 재산관리	① 부모 사후 성년인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생명보험금의 안전한 관리 및 활용 (생애주기별 학비, 생활비, 요양비 지급) ② 성년후견제도의 보완 (후견인의 재산편취 행위 방지 및 후견업무의 효율성)
3	고령자를 위한 재산관리 (미혼의 위탁자)	① 고령의 부모를 둔 자녀의 생명보험금의 안전한 관리 및 활용 ② 성년후견제도의 보완 (후견인의 재산편취 행위 방지 및 후견업무의 효율성)
4	현명한 상속 설계 및 집행	① 수익자연속신탁(예, 배우자 → 자녀 → 손자녀) 활용 ② 가치상속 가능한 인센티브신탁(조건부 지급: 결혼, 출산, 학위, 직장생활 등) ③ 절세 전략으로 철회불능 생명보험청구권 신탁 활용 가능 (※ 해석 or 법개정 필요)

“사회적 효용성이 많은 생명보험청구권신탁 도입을 위한 그 동안 노력”

1	생명보험청구권의 신탁재산성 (2010년 7월, 금융위원회)	『생명보험청구권 = 금전채권』이라는 유권해석 → 수탁 가능한 신탁재산
2	생명보험금청구권의 양도 가부 (2013년 6월, 법무부)	보험수익자(위탁자)의 보험금청구권 양도는 불가 (허용할 경우, 보험범죄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고려)
3	보험수익자를 신탁회사로 변경 가부 (2013년 6월, 법무부)	생명보험계약 체결 후 보험수익자를 신탁회사로 변경하는 것은 신탁설정 방법인 ‘소유권의 이전’ 또는 ‘그 밖의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함
4	가족을 위한 생명보험금청구권 허용(2022년 진행 中)	신탁수익자를 가족(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로 한정하여 생명보험금청구권 허용하 는 입법논의(자본시장법 개정, 법무부의 적극적 협조가 필요)

“생명보험금청구권신탁으로 범죄가 조장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울러 보험사가 신탁회사와 동일하더라도, 이해상충문제가 발생하지 않음 ”

1

보험범죄 조장한다?

원래 ‘보험계약의 수익자’를 ‘신탁계약의 수익자’로 변경할 뿐이므로, 보험청구권신탁 허용으로 보험 범죄가 증가될 것이라는 것은 오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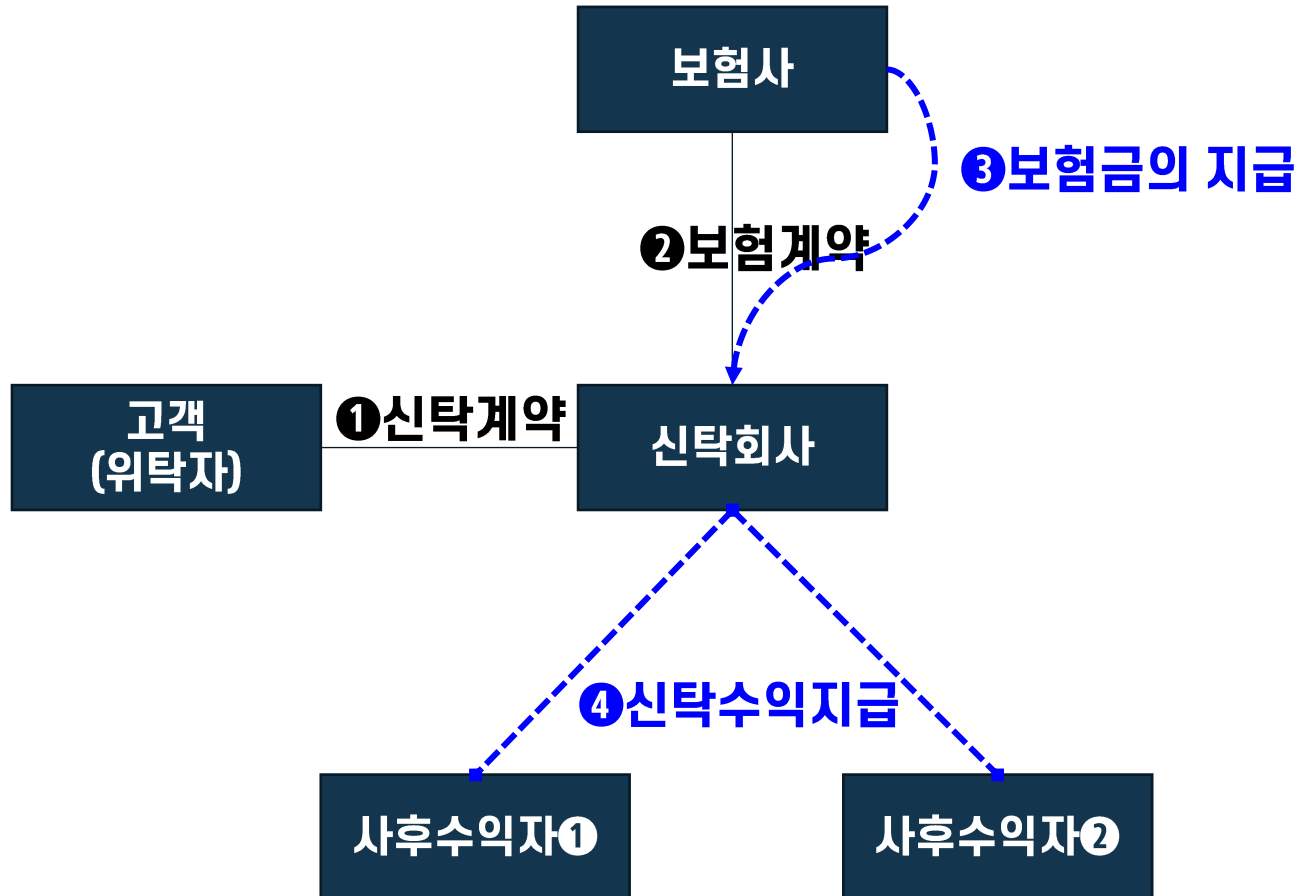
[예, 보험계약자(부), 피보험자(부), 보험수익자(자녀) → 보험계약자(부), 피보험자(부), 보험수익자(신탁 회사), 신탁수익자(자녀), 신탁한다고 하여 보험범죄 증가되는 것은 아님. 실질적 보험수익자는 신탁수익자라 할 수 있고, 신탁회사는 신탁수익자를 위해 보험금을 보관, 관리, 지급해주는 역할을 할 뿐임]

2

**보험사와 신탁회사가 동일한
경우, 이해상충문제 발생한다?**

보험사고 전인 ‘보험기간’ 중에는 보험사로서 업무 수행, 보험사고 발생으로 보험금이 신탁재산으로 편입된 경우에는 신탁회사로서 업무수행 → 이론상 특정 시점에 보험사로서의 역할과 수탁자로서 역할이 실질적으로 동시에 수행할 가능성 없음 → 보험회사가 동시에 수탁자가 된다고 하여,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님

신탁 구조



계약 절차

- ① 유언신탁계약 체결 (고객과 신탁회사)
- ② 보험계약체결(신탁회사와 보험사)
- ③ 보험사고발생 시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 ④ 신탁계약 내용에 따른 신탁회사의 수익지급

[주요 신탁조건]

- ① 수익권 지급 조건
- ② 수익권 지급 방법(정기지급, 수시지급)
- ③ 수익권 비율(수익자 복수)
- ④ 인센티브 조건(학위, 결혼, 출산, 취업 등)

“신탁회사는 보험계약을 수탁할 수 없고, 보험계약도 체결할 수 없다”

1

생명보험계약은 수탁가능
재산인가?

- ① 생명보험계약자가 생명보험계약상 지위 or 생명보험금청구권을 신탁회사에게 이전할 수 있는가?
- ② 보험증권을 수탁할 수 있는가?

2

수탁한 금전으로 보험계
약을 체결할 수 있는가?

신탁회사가 보험회사와 위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가?

질의 내용

생명보험에서 보험사고 발생 전에 보험금청구권을 **보험수익자(위탁자)**가 신탁회사(수탁자)에게 양도하는 방법으로 신탁을 설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답변
요지

- ① 보험사고 발생 전의 보험금청구권의 양도를 일반적으로 허용할 경우 피보험자와 전혀 무관한 제3자가 보험금을 수령하게 되어 유족의 생계보장이라는 생명보험의 취지에 반하고 보험범죄의 위험이 증가하게 됨
- ② 피보험자의 동의가 있으면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는 취지의 상법 제731조 제2항은 동조 제1항 및 보험계약자의 보험수익자 변경권을 규정한 제733조와의 관계와 조문 체계를 고려하면 위 양도의 주체는 “**보험계약자**”라고 할 것임
- ③ 질의자가 제시한 판례(99다72453)는 손해보험의 일종인 단기수출보험에서의 보험금청구권 양도를 인정하는 취지로 판시한 것으로, 계약체결에 있어서 강한 선의를 요구되는 생명보험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 없음
- ④ 따라서 질의와 같은 방법으로 신탁을 설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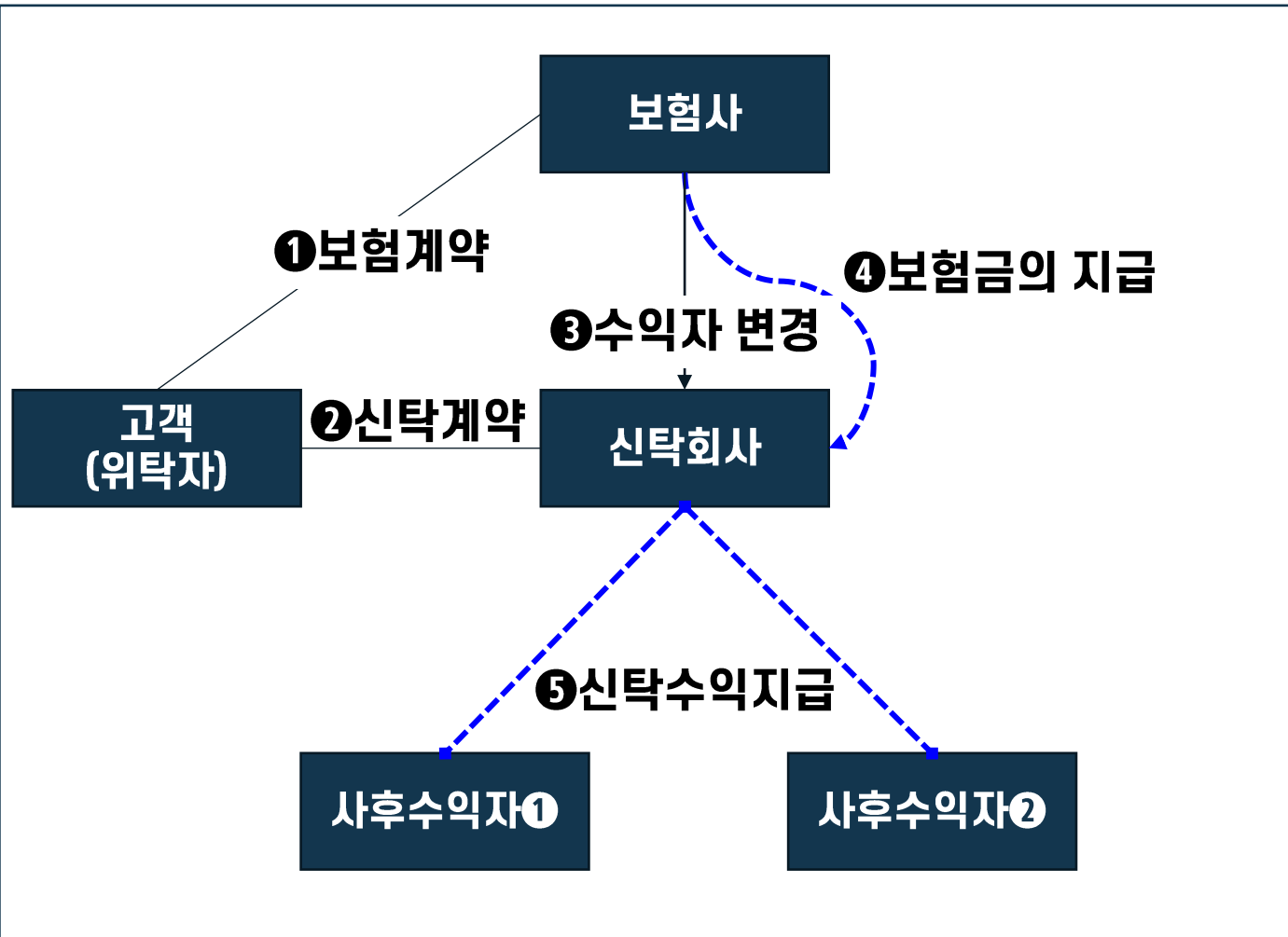
제103조(신탁재산의 제한 등) ① 신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재산 외의 재산을 수탁할 수 없다. <개정 2011. 5. 19.>

1. 금전
2. **증권** ※생명보험계약에서 보험증권은 ‘증거증권’임
3. **금전채권**
4. 동산
5. 부동산
6. 지상권, 전세권, 부동산임차권,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 그 밖의 부동산 관련 권리
7. 무체재산권(지식재산권을 포함한다)

제105조(신탁재산 등 운용의 제한) ① 신탁업자는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1. 증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에 한한다)의 매수
2. 장내파생상품 또는 장외파생상품의 매수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에의 예치
4. 금전채권의 매수
5. 대출
6. 어음의 매수
7. 실물자산의 매수
8. 무체재산권의 매수
9. 부동산의 매수 또는 개발
10. 그 밖에 신탁재산의 안전성 · 수익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신탁 구조



계약 절차

- ① 고객과 보험사의 보험계약 체결
- ② 고객과 신탁회사의 신탁계약 체결
- ③ 고객의 보험수익자 변경(고객 → 신탁회사)
- ④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 신탁회사로 지급
- ⑤ 신탁계약 내용에 따른 신탁수익지급

[주요 신탁조건]

- ① 수익권 지급 조건
- ② 수익권 지급 방법(정기지급, 수시지급)
- ③ 수익권 비율(수익자 복수)
- ④ 인센티브 조건(학위, 결혼, 출산, 취업 등)

쟁점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본인’에서 ‘신탁회사’로 변경하는 것이 신탁의 설정방법인가? 신탁법 제2조가 규정하고 있는 보험금청구권의 ‘**소유권 이전**’ 또는 보험금청구권의 ‘**그 밖의 처분**’으로 볼 수 있는가?

신탁법

제2조(신탁의 정의) 이 법에서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영업이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분석

보험수익자를 지정하고 변경할 수 있는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신탁회사(실질적으로는 신탁수익자)로 변경함으로써, 보험수익권의 귀속주체를 신탁회사로 변경한 것이므로, 실질적인 보험금청구권의 이전이 있다고 볼 수 있고,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 밖의 처분’으로 포섭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보험계약자가 재차 보험수익자를 변경하지 않고 보험사고가 일어나면, 보험회사는 신탁회사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를 부담함. 이 점은 통상의 금전채권을 신탁하는 경우와 같다고 볼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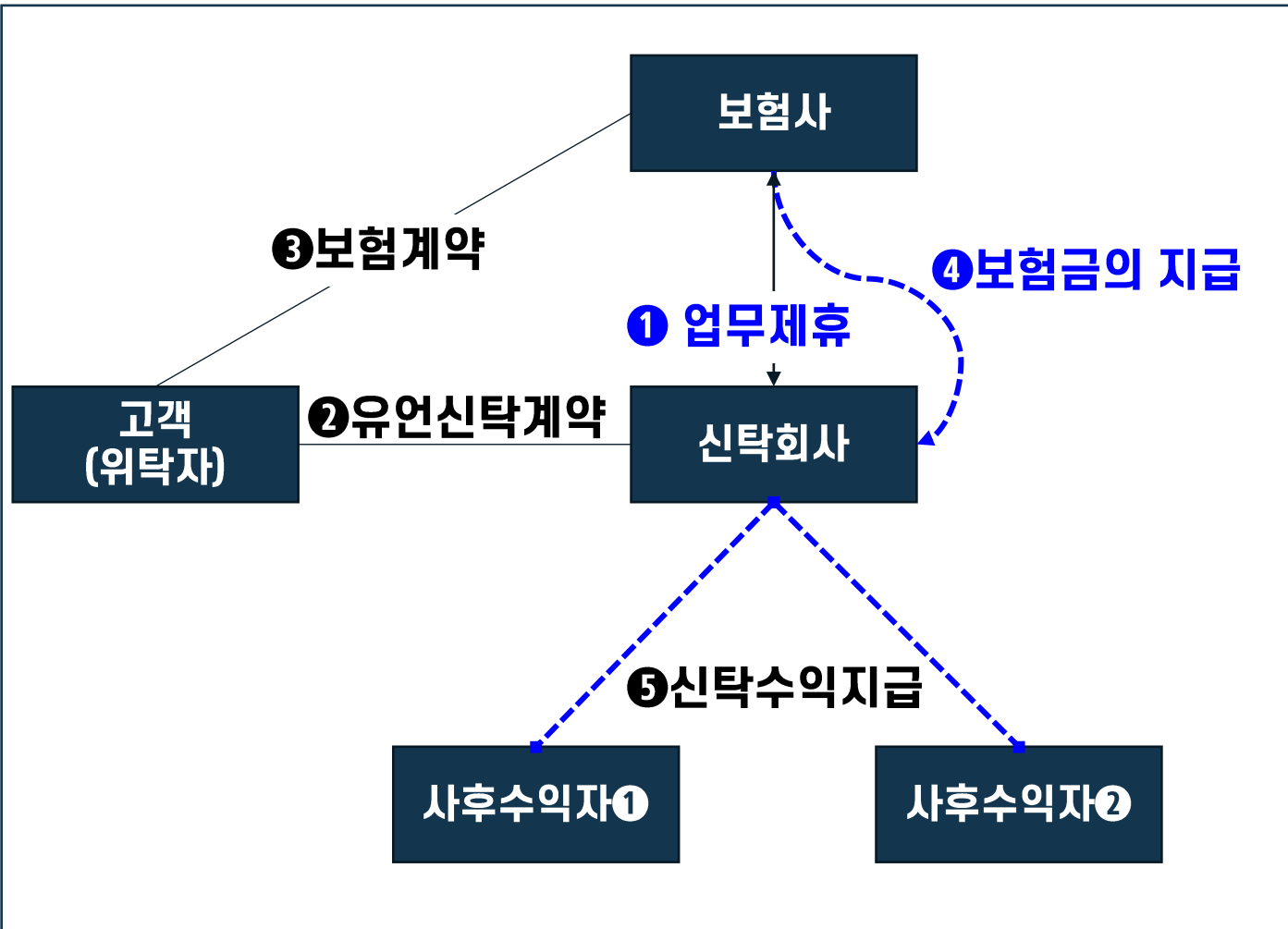
질의 내용

보험계약자이자 피보험자인 위탁자가 장래에 발생할 생명보험의 보험금청구권을 수탁자에게 위탁하기 위하여 수탁자를 보험수익자로 신규 지정하는 행위, 위탁자가 본인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후, 보험수익자를 위탁자에서 수익자로 변경하는 행위를 각각 “특정의 재산의 이전” 또는 “그 밖의 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답변
요지

- ① 신탁법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신탁의 설정 방법인 “재산의 이전” 및 “그 밖의 처분”은 이미 특정한 재산이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그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처분하는 행위를 의미함
- ② 보험계약자의 보험수익자 지정행위는 보험자를 향한 단독행위로, 보험계약자는 보험수익자의 동의 없이 보험수익자를 지정, 변경할 수 있어(상법 제733조) 제3자가 보험수익자로 지정되더라도 보험수익자로 확정되는 것인 아니라 언제든지 보험수익자가 변경될 수 있는 불안한 지위에 놓이게 되는 점, 보험계약자가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후 보험사고 전에 보험수익자를 제3자로 변경하는 경우 보험계약자의 보험금청구권이 소멸하고 제3자는 변경권 행사의 효과로 새로운 보험금청구권을 취득하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보험계약자의 보험수익자 지정·변경행위는 통상의 재산의 이전 또는 처분과 다르다할 것임.
- ③ 따라서 보험계약자인 위탁자가 수탁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하는 행위, 보험수익자를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변경하는 행위 모두 신탁법상 “재산의 이전” 또는 “그 밖의 처분”으로 볼 수 없다할 것임

신탁 구조



계약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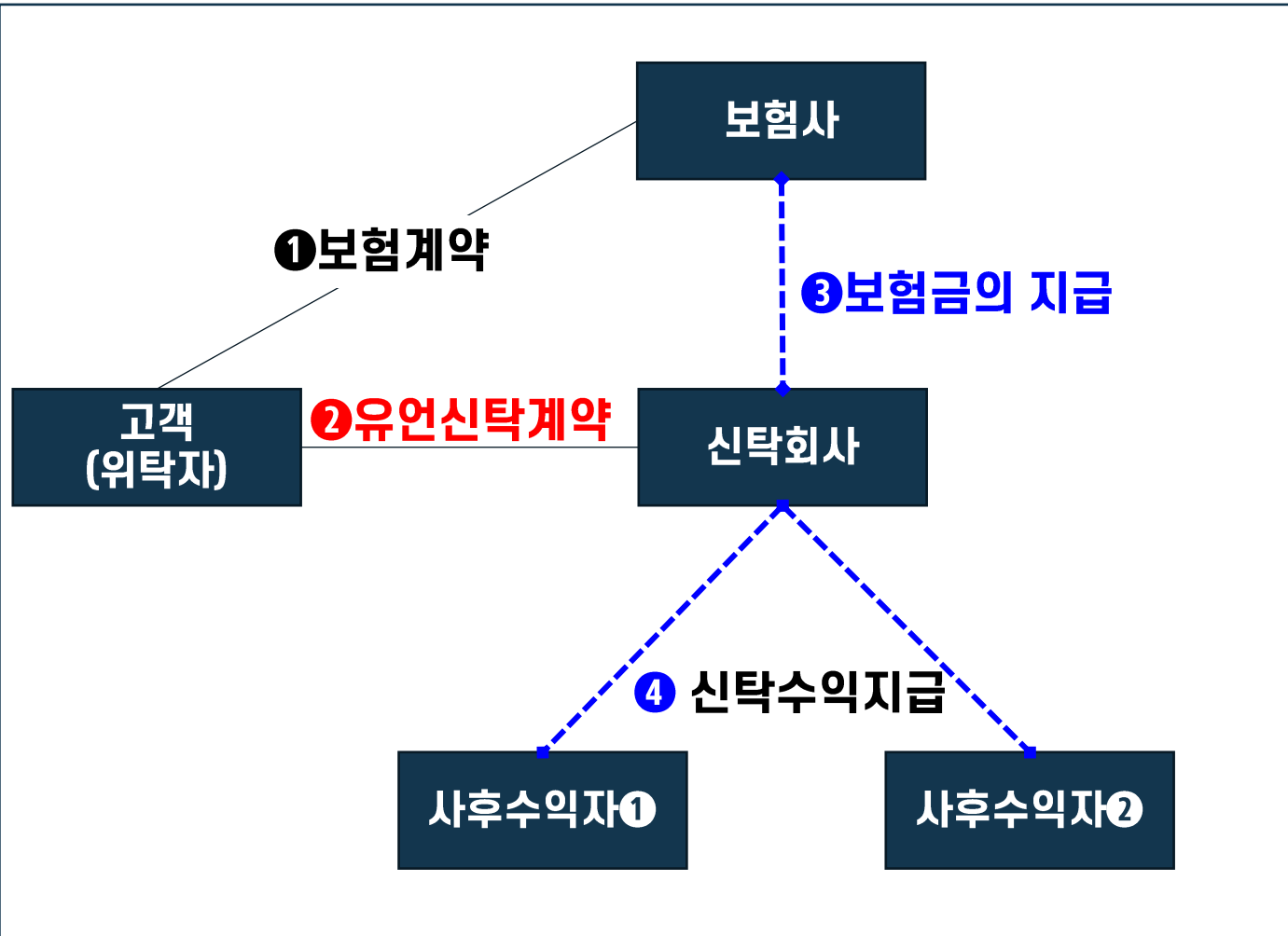
- ① 신탁회사와 보험사의 업무제휴
- ② 고객과 신탁회사의 신탁계약 체결
- ③ 고객과 보험사의 보험계약 체결(수익자: 고객)
- ④ 보험사고 시 보험금 신탁회사 신탁계좌로 지급
- ⑤ 신탁계약 내용에 따른 신탁수익지급

[주요 신탁조건]

- ① 수익권 지급 조건
- ② 수익권 지급 방법(정기지급, 수시지급)
- ③ 수익권 비율(수익자 복수)
- ④ 인센티브 조건(학위, 결혼, 출산, 취업 등)

Q. 보험계약자 사망 시 보험사가 보험금을 신탁회사로 이전할 수 있는지? (상속법리와 상충 可)

신탁 구조



계약 절차

- ① 고객과 보험사의 보험계약 체결(수익자: 고객)
- ② 고객과 신탁회사의 유언신탁예약계약(유언공증)
- ③ 보험사고 시 신탁회사의 유언집행자 업무개시
- ④ 유언집행으로 보험금 신탁회사 신탁계좌로 지급
- ⑤ 유언신탁 내용에 따른 신탁수익지급

[주요 신탁조건]

- ① 수익권 지급 조건
- ② 수익권 지급 방법(정기지급, 수시지급)
- ③ 수익권 비율(수익자 복수)
- ④ 인센티브 조건(학위, 결혼, 출산, 취업 등)

Q. 신탁회사가 유언집행자가 될 수 있는가?

보험계약

Synchronizing

신탁계약

1	보험계약자	본인
2	피보험자	본인
3	보험수익자	본인 지정 후 신탁회사로 변경
4	보험유형	생명보험(종신, 변액보험 등)
5	해지 변경	신탁회사로 통지
6	보험수익자	신탁 후 보험수익자 변경 불가
7	보험약관	보험약관 변경 시 신탁회사와 협의
8	보험사고	보험사고 발생 시 신탁회사로 통지

1	위탁자	보험계약자
2	수탁자	신탁회사(인가)
3	사후수익자	친족 or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 限
4	설정방식	보험수익자 변경
5	신탁유형	증여신탁, 상속신탁
6	해지 변경	보험회사로 통지
7	중도해지	가능 BUT 보험금 수령 후 불가
8	금전운용	재량신탁(안전자산으로 운용) BUT 위탁자가 운용방법 지정 가능

“생명보험청구권신탁의 사회적 순기능을 활용하기 위해, 세제혜택, 판매채널 확대 등 제도 개선 필요”

1	유류분제도의 예외인정	미성년자녀 or 장애인 등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유류분제도의 예외를 인정할 필요
2	세제혜택 부여	생명보험금청구권신탁 활성화를 위해 상속세 과표불산입 특례 신설
3	신탁대리점업 허용 (신탁판매채널확대)	신탁판매채널 확보 및 고객 동선 간소화를 위해 보험회사의 신탁대리점 허용
4	원금보장형 신탁 허용	미성년자녀 or 장애인 등 보호를 필요로 하는 신탁수익자를 위한 신탁이므로, 자본시장법을 개정하여 생명보험금청구권신탁에 한하여 원금보장이 가능하도록 개선
5	금전신탁형 보험청구권 허용 법제 정비	보험계약의 양도가능하도록 하여 다양한 구조의 생명보험신탁이 가능하도록 개선